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도록 함(안 제22조의5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